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105001(본소), 2022가합102436(반소) 판결
[공사대금 · 노무비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9. 11 선고 2023나15262(본소), 2023나15279(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10500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변론 종결 2023. 8. 25.

판결 선고 2023. 9.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0.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에게 154,5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1) 피고에게 42,967,010원 및 그 중 2,315,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4.부터, 60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3,69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3.부터, 16,86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4.부터, 14,17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1.부터, 5,312,010원에 대하여는 2021.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8.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기간 2020. 8. 20.부터 2021. 2. 28.까지, 도급금액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F(주) 평택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E은 2021. 2. 28. 공사기간을 2020. 8. 20.부터 2021. 3. 31.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3. 31. 공사기간을 2020. 8. 20.부터 2021. 9. 30.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20. 10.경 피고로부터 공사기간 2020. 10. 23.부터 2021. 2. 28.까지, 공사금액 379,800,000원으로 정하여 F(주) 평택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10.경 피고로부터 공사기간 2020. 10. 23.부터 2021. 2. 28.까지, 공사금액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F(주) 평택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철근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2021. 4. 11.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원고 회사가 계약하여 시행한 공사 내용 중 2021. 4. 11.자로 타절한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공사분을 2021. 4. 12.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107,980,000원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21.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잔여 기성지급금을 3월 기성 100,000,000원을 장비투입비 및 용역투입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4월 기성 60,000,000원을 장비투입비 및 용역투입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조경 옹벽 15,000,000원, G 17,240,000원을 월별 공제 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기성지급계약(이하 '제1차 기성지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들은 2021. 5.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2021. 3. 기성에 한하여 80,000,000원을 2021. 5. 6. 지급받고 잔여공사 마무리까지 일체의 작업중지 및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하루라도 작업 중단시 모든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피고에서 직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4월부터

발생한 기성에 대하여는 E에서 지급한 금액(내역서 기준)을 %에 맞춰 5일 이내 지급받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성지급계약(이하 '제2차 기성지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21. 5. 6. 원고 회사에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2, 11, 12, 14,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2021. 4. 11.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2021. 3.분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154,558,500원(= 기성고 청구 공사대금 735,850,5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81,2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원고 B은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에 따라 2021. 4. 20.부터 2021. 5. 30.까지 철근공사를, 2021. 4. 22.부터 2021. 6. 17.까지 형틀공사를 각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한 돈 581,292,000원과 피고가 장비 업체, 자재 업체 등에 직접 지급한 장비비, 자재비 94,975,650원을 더하면 676,267,650원으로 E이 인정한 기성고 640,555,003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고, 제2차 기성지급계약을 통해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21. 4.경부터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예비적으로, 반소로 구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에게, 자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건설하도급면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고를 속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35,850,5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3. 기성에 한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2021. 3.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위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5호증,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21. 4. 11.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고 B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7,9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잔여공사의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 제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등 참조)

을 제28, 29, 32,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우창

판사김지영

판사곽여산

1) 피고는 반소장에서 '반소피고들은 각자(또는 연대하여 또는 공동으로) 반소원고에게'라고 기재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 청구를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라고만 기재하였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